

등록번호	세무2과-9358
등록일자	2016.5.2.
결재일자	2016.5.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방소득세팀장	세무2과장	경제재정국장
송경순	서상범	장미령	05/02 오남희
협 조			

**2016년 5월**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계획**



**서 대 문 구**  
세무2과

2016년도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계획』

- 2016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2016.5.1~31)동안 적극적인 지방소득세 납부홍보로 납기내 신고납부를 제고 및 세입목표달성
- 친절한 안내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납세자 불편해소 및 세정신뢰도 향상

### 1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개요

- 납세의무자 : 우리구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 세율 : 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납세지 :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
- 신고납부기간 : '16. 5. 1 ~ 5.31(성실신고대상자 6월30일까지)

### 2 세입현황

- '15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징수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합계		5월 신고납부		6월 신고납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3,836	6,745	11,654	3,400	2,182	3,345

\* '15년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액 전체(7,982백만원)의 84.5%

### 3

### 중점 추진 사항

-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및 ETAX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정보 제공
- 신고납부관련 민원 친절 안내 · 신속한 처리
- 지역 언론, 반상회보 등 언론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강화

### 4

### 세부 추진 계획

#### 가.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철저

- 홍보기간 : 2016.05.01 ~ 05.31
- 안내문 발송
  - 우리구 관내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소득세 신고납부대행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토록 안내 및 국세청홈택스에서도 동시 납부가능함을 홍보)

#### <중점 안내사항 >

- ▶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정하였고
- ▶ 세액 공제·감면사항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 규정을 그대로 도입하여 지방소득세액은 국세 결정세액 10% 수준이며
- ▶ 2016년 까지 국세(소득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세지 지자체별로 별도 납부 사항을 안내

- 안내문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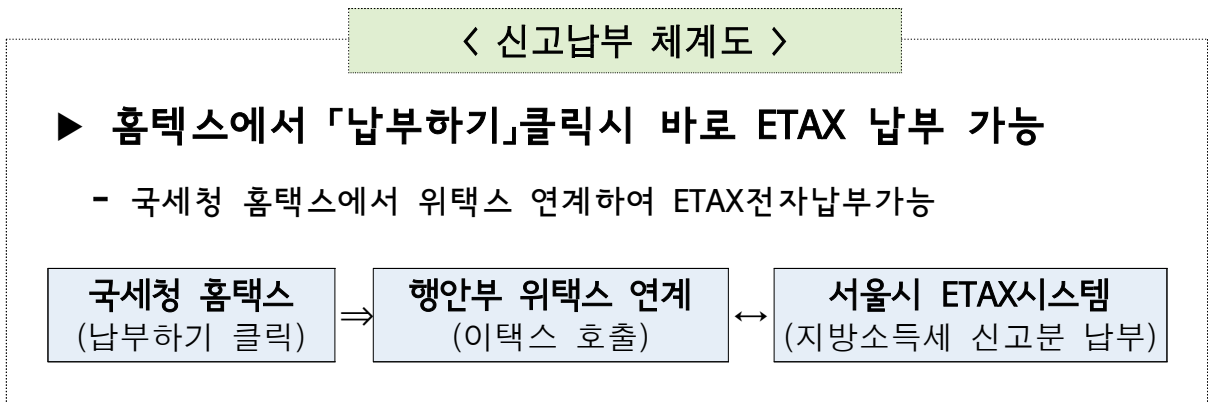
- 신고·납부 상담원 지정운영
  - 운영 기간 : 2016. 5. 11 ~ 5. 31

- 설치 장소 : 세무종합민원실
- 운영 요령
  - 지방소득세 업무와 인터넷 전자납부에 대하여 전직원을 교육하여 신고 납부안내 및 민원처리를 친절 · 신속하게 응대
  - 신고납부 상담원 지정

부서	직급	성명	전화(팩스)	비고
세 무 2 과	7급	송경순	330-1213 330-1579	납기마감 연장근무
세 무 2 과	7급	김재현	330-1215	

다양한 신고·납부 편의 제공

- 국세(종합소득세)와 동시 지방소득세 납부



- 국세(종합소득세)와 별도 지방소득세 납부
  -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에 의한 금융기관, ATM 등 납부가능함을 적극 안내하도록 함.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 설치기간 : 2016. 5.11 ~ 5. 31
- 설치장소 : 구계시대(현수막), 동주민센터(입간판)

- 구 홈페이지 및 보도매체를 활용한 홍보
  -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신고납부 홍보강화
  - 서대문마당에 신고납부 안내문 게재

## 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구축

- 관내 세무사, 회계사 협조요청 공문발송
  - 소득세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납부토록 협조의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ETAX를 이용하여 납부토록 홍보
- 은행등 수납기관 협조요청
  - 우리구 관내 은행 등 수납기관에 소득세 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납부홍보 하도록 협조공문 발송

**5**

## 행정 사항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현황 보고 : 서울시 세무과(2016.6.3까지)
- 홍보과, 건설관리과, 전산정보과, 주민센터 등 협조 공문발송 : 2016.5.9까지

- 붙임 1.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안) 및 유의사항 1부.  
 2. ETAX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문 1부.  
 3. 홍보문안(현수막, 소식지 등), 입간판문안 1부  
 4. 신고납부 실적제출 서식 1부. 끝.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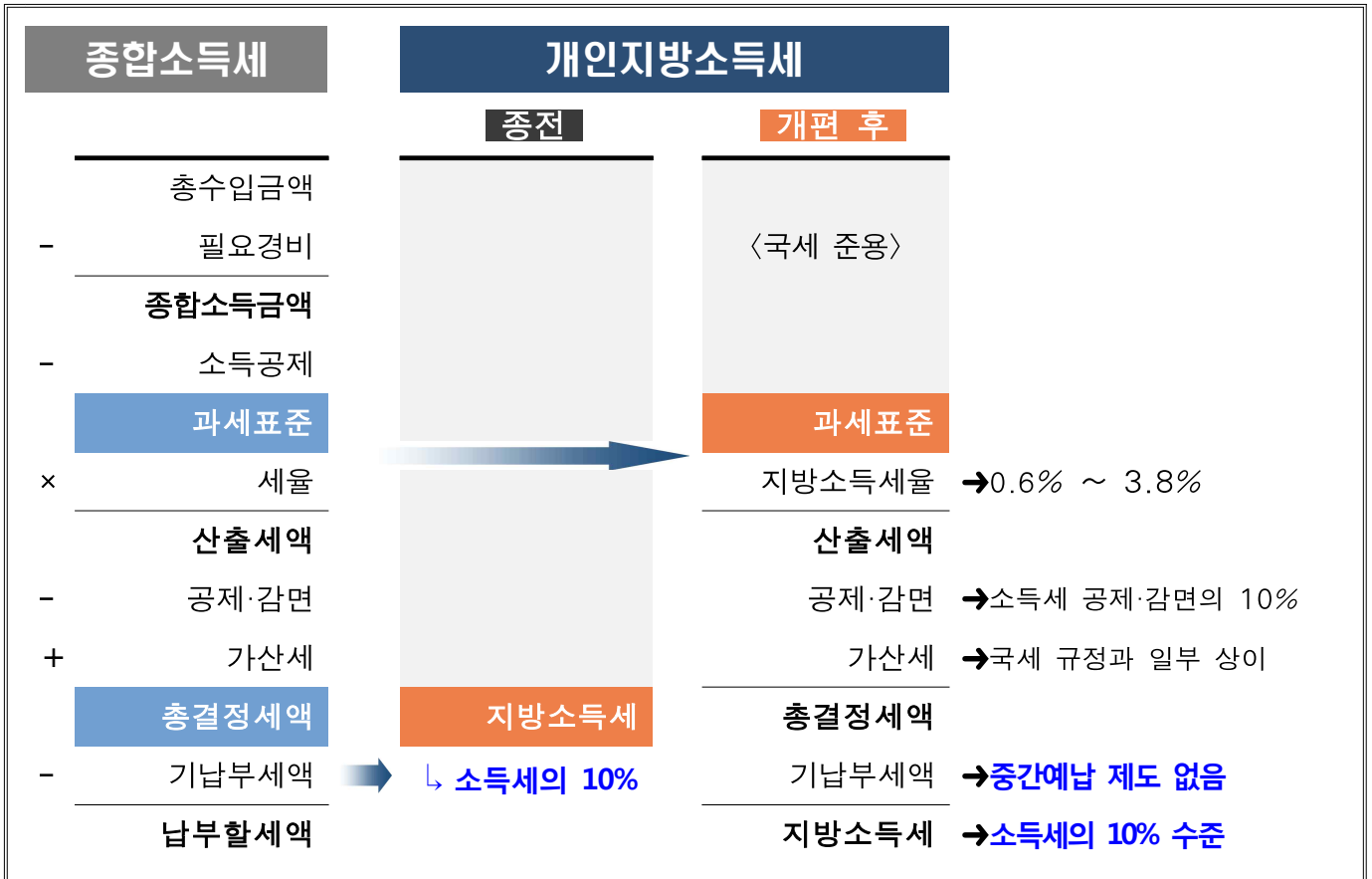
-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201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로서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 '16. 5.1. ~ 5.31까지(성실신고대상자는 6/30 까지) 입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하며,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입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시신고를 통한 납부 및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행자부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뱅킹, ATM, 스마트폰, ARS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내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0,000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기 마감일에는 신고·납부 집중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대 문 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2] 330-1325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안내



종전 소득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과세기 간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3.8%),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 수준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 납부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①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② 납세지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지 지정제도는 지방세 규정에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 4,600만원 이하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8,800만원 이하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1.5억원 이하	1,590,000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원 초과 ~	3,760,000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⑤ 세액공제 · 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⑥ 가산세는 국세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 국세와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국세> 1개월 내 50%, 6개월내 20% 감면 <지방세> 1개월 내 50%. 6개월 내는 규정 없음
- 「지방세법」 제99조에서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를 지방세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장 불성실,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7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서울, 세액공제감면 등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으나,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16.3.16.>

작성방법

지방소득세란: ④ 과세표준란에는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④ 서울란·④ 산출세액란에는 서울표에 소득세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서울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④ 세액감면 및 ④ 세액공제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④와 ④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④ 가산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④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단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기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④ 추가납부세액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④의 100분의 10에 금액을 적습니다. ④ 기납부세액은 ④종합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4년~2015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서울	누진공제액	서울	누진공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3.8%	1,940천원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
총 합 소 득 금 액	①			
소 득 공 제	②			
과 세 표 준	(①-②)		④	⑥
세 율	④		④	⑥
산 출 세 액	③		④×④-누진공제액	⑥
세 액 감 면	④		④의 10%	
세 액 공 제	⑤		⑤의 10%	
결 정 세 액	(③-④-⑤)		④-④-⑤	⑥
가 산 세	⑦		⑦의 10%	⑧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⑧		⑧의 10%	⑩
합 계	(⑥+⑦+⑧)		⑥+⑦+⑧	⑩
기 납 부 세 액	⑩		(⑩-중간예납)④ 10%	⑫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⑩-⑩)		⑩-⑩	⑫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⑬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⑩-⑬+⑬-⑭)		⑩	⑫

**⑧ 전자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동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
- 이택스 및 위택스와 연계하여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http://www.wetax.go.kr))

## [별첨2] ETAX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 ETAX 접속(<https://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분 순으로 선택하여 → 납세의무자 정보 → 신고내역 → 산출세액 등 입력, 하단에 신고하기 클릭 → 납부

The screenshot shows the 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조회납부', '신고납부', '납부(영수증)확인', '환급금', '나의 ETAX', '지방세 정보', 'ETAX 이용안내', and '+ 전체메뉴'. The '신고납부' tab is selected and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Below the tabs, there are several categories of taxes: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and '자동차세면납'. The '지방소득세' category is expanded, and '종합소득세분'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Below this, there is a form titled '신고납부' with a sub-section '납세의무자 정보'. The form includes fields for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and '전화번호'. There are also dropdown menus for '관할구청' and '행정동 선택'. A red box at the bottom of the form contains the text: '회원가입시 등록된 정보가 표시되며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납부 후엔 수정이 불가능하니 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전 은행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은행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신용카드 납부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카드사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납부가능 카드 :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외환, KB국민, NH, 하나, 씨티, 광주, 전북VISA, 제주VISA, 수협

※ 이 외 카드는 사용할 수 없음

## [별첨3] 홍보문(안)

### 홍보문(안)

- 현수막, 구소식지, 관내신문, 서서울케이블TV, 구 홈페이지문안

5월은 지방소득세(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16. 5. 1 ~ 5. 31
  - ※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과 동일함
- 납부장소 : 시중은행(수협,농협 포함), 시내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 문의전화 : 서대문구청 세무2과(☎ 330-1352)

- 입간판

5월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의 달  
○ 신고납부기간 : 2016. 5. 1 ~ 5. 31  
※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함  
○ 납부장소 : 시중은행(수협·농협 포함)  
· 시내새마을금고·전국우체국

서대문구청장

**[별첨4-1]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실적 제출**

( ○ ○ 구 )

**신고·납부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납기후 포함(6.30기준)		2016. 5. 31일까지		비고
신고납세자	신고세액	신고납세자	신고세액	

**홍보 실적**

(단위 : 건, 개소)

인터넷	안내문 발송	지역신문·방송 등	납세상담원지정 및 상담 실적	기 타

**기타사항(수범사례·제도개선 등)**

